더샵 분당하이스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대표번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분양일정, 청약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더샵분당하이스트.kr	1800-1430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 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0.02.)로부터 3년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9.11.(금)	2026.11.23.(월)	2026.11.30.(월)	2026.12.03.(목)	2026.12.05.(토)

1 공통 유의사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잔여세대 (무순위)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2026.06.15.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23.(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304입니다.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청약불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03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11.30.(월)	2026.12.03.(목)	2026.12.05.(토)
방법	-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 청약홈	- 더샵 분당하이스트 분양홍보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F (동천동, 분당수지U타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10년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청약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로(2026.10.02.)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간 적용됩니다.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번지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26층, 17개동, 총 1,149세대 중 일반분양 143세대의 잔여 34세대

입주예정시기 : 2027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약식표기(타입)	타입별 세대수	총 공급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2026 910304	01	074.0000A	74B1	1	1	401-301
	02	074.4400D	74B1-1	1	1	416-204
	03	084.0000A	84A1	5	18	402-702, 403-201, 403-204, 403-301, 403-302, 403-304, 407-202, 407-702, 409-601, 409-1602, 410-202, 413-201, 413-202, 413-302, 414-201, 414-203, 414-301, 414-1001
			84A1-7	4		
			84A2	9		
	04	084.0000C	84A1-4	1	2	402-201, 402-704
			84A1-8	1		
	05	084.6400G	84A4	12	12	415-305, 415-405, 415-505, 415-605, 415-705, 415-805, 415-1005, 415-1105, 415-1205, 415-1305, 415-1405, 415-1605
합계				34		-

- 84A2 타입 최상층 세대(409-1602)의 경우 다락이 설치되며, 해당 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된 단위세대 평면과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분양홍보관에서 해당 세대의 인·허가 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01동 1층 : 키즈스테이션, 412, 413동 1층 : 게스트하우스, 417동 1층 : 카페테리아, 417동 23층 : 스카이라운지가 위치하고있어,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인접세대는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만원)

주택형	약식표기 (타입)	동라인별	층 구분	세대수	토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이내	2027.02.15.		2027.04.15.	2027.06.15.	2027.08.13.	2027.10.15.	
074.0000A	74B1	401동 1호	3층	1	149,888	84,312	234,200	5,000	18,420	23,420	23,420	23,420	23,420	23,420	23,420	70,260
074.4400D	74B1-1	416동 4호	2층	1	147,328	82,872	230,200	5,000	18,020	23,020	23,020	23,020	23,020	23,020	23,020	69,060

주택형	약식표기 (타입)	동라인별	층 구분	세대수	토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이내	2027.02.15.		2027.04.15.	2027.06.15.	2027.08.13.	2027.10.15.	입주지정일
084.0000A	84A1	403동 4호 414동 1호	2층	2	171,712	96,588	268,300	5,000	21,830	26,830	26,830	26,830	26,830	26,830	26,830	80,490
			3층	2	174,848	98,352	273,200	5,000	22,320	27,320	27,320	27,320	27,320	27,320	27,320	81,960
			10층	1	179,968	101,232	281,200	5,000	23,120	28,120	28,120	28,120	28,120	28,120	28,120	84,360
	84A1-7	403, 409, 413동 1호	2층	2	171,712	96,588	268,300	5,000	21,830	26,830	26,830	26,830	26,830	26,830	26,830	80,490
			3층	1	174,848	98,352	273,200	5,000	22,320	27,320	27,320	27,320	27,320	27,320	27,320	81,960
			6층	1	176,768	99,432	276,200	5,000	22,620	27,620	27,620	27,620	27,620	27,620	27,620	82,860
	84A2	402동 2호	7층	1	175,296	98,604	273,900	5,000	22,390	27,390	27,390	27,390	27,390	27,390	27,390	82,170
		403, 407, 409, 410, 413동 2호 414동 3호	2층	4	171,712	96,588	268,300	5,000	21,830	26,830	26,830	26,830	26,830	26,830	26,830	80,490
			3층	2	174,848	98,352	273,200	5,000	22,320	27,320	27,320	27,320	27,320	27,320	27,320	81,960
			7층	1	176,768	99,432	276,200	5,000	22,620	27,620	27,620	27,620	27,620	27,620	27,620	82,860
			16층	1	190,784	107,316	298,100	5,000	24,810	29,810	29,810	29,810	29,810	29,810	29,810	89,430
084.0000C	84A1-4	402동 4호	7층	1	175,296	98,604	273,900	5,000	22,390	27,390	27,390	27,390	27,390	27,390	27,390	82,170
	84A1-8	402동 1호	2층	1	170,240	95,760	266,000	5,000	21,600	26,600	26,600	26,600	26,600	26,600	26,600	79,800
084.6400G	84A4	415동 5호	3층	1	180,032	101,268	281,300	5,000	23,130	28,130	28,130	28,130	28,130	28,130	28,130	84,390
			4층	1	180,992	101,808	282,800	5,000	23,280	28,280	28,280	28,280	28,280	28,280	28,280	84,840
			5-8층	4	181,952	102,348	284,300	5,000	23,430	28,430	28,430	28,430	28,430	28,430	28,430	85,290
			10층	1	184,960	104,040	289,000	5,000	23,900	28,900	28,900	28,900	28,900	28,900	28,900	86,700
			11-12층	2	185,600	104,400	290,000	5,000	24,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87,000
			13-14층	2	186,240	104,760	291,000	5,000	24,100	29,100	29,100	29,100	29,100	29,100	29,100	87,300
			16층	1	186,880	105,120	292,000	5,000	24,200	29,200	29,200	29,200	29,200	29,200	29,200	87,6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 공사 진행 중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공정상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분양대금	393301-04-102278	KB국민은행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01동 201호 계약자 → '4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3.(목) ~ 2026.12.12.(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2.0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생년월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사업주체 요구서류	대상자	해당 주택 소명자료, 단신부임 입증서류,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발급본도 제출 가능합니다.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계약 체결 일정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기간	당첨자 : 2026.12.05.(토), 10 ~ 12시	예비입주자 : 2026.12.05.(토), 14 ~ 16시
장소	분양홍보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F (동천동, 분당수지U타워)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의 일정 또는 장소 변경 시에는 SMS,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서류제출 불가 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당첨자의 경우 분양홍보관으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 해당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의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단신부임 입증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해당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계약체결기간 및 구비서류

<table>
<tr><th>구분</th><th>당첨자 계약기간</th><th>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기간</th></tr>
<tr><td>기간/장소</td><td>2026.12.05.(토), 10 ~ 13시</td><td>2026.12.05.(토), 16시까지 입장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후 즉시계약)</td></tr>
<tr><td>장소</td><td colspan="2">분양홍보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F (동천동, 분당수지U타워)</td></tr>
<tr><td>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td><td colspan="2">
<table>
<tr><th>구분</th><th>해당서류</th><th>대상</th><th>서류제출 유의사항</th></tr>
<tr><td rowspan="4">본인 계약 시</td><td>계약금 입금 증빙내역</td><td rowspan="4">청약자</td><td>무통장 입금증 또는 모바일 /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등 (＊현금수납 불가)</td></tr>
<tr><td>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td><td>「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작성 및 증빙서류 관할기관 제출서류</td></tr>
<tr><td>인감증명서</td><td>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기제출한 경우 제외</td></tr>
<tr><td>인감도장, 신분증</td><td>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td></tr>
<tr><td rowspan="2">대리인 계약 시</td><td>인감증명서, 인감도장</td><td>청약자</td><td>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td></tr>
<tr><td>신분증, 인장</td><td>대리인</td><td>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td></tr>
</table>
※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발급본도 제출 가능합니다.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계약 시 서류 외에 대리인 계약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d></tr>
<tr><td>유의사항</td><td colspan="2">-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td></tr>
</table>

8 참고사항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table>
<tr><th>검색대상</th></tr>
<tr><td>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td></tr>
<tr><th>주택의 범위</th></tr>
<tr><td>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td></tr>
<tr><th>주택처분 기준일</th></tr>
<tr><td>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th></tr>
<tr><td>1</td><td>-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td></tr>
<tr><td>2</td><td>-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td></tr>
<tr><td>3</td><td>-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td></tr>
<tr><td>4</td><td>-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td></tr>
<tr><td>5</td><td>- 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td></tr>
<tr><td>6</td><td>-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td></tr>
<tr><td>7</td><td>-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td></tr>
</table>

8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10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기타 계약자 안내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확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더샵분당하이스트.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 (시행사)	시공사
상 호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포스코이앤씨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65, 204호(정자동, 구미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등록번호	135671-0037795	174611-000297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현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번지
분양홍보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F (동천동, 분당수지U타워)
분양문의	1800-1430
공식 홈페이지	https://더샵분당하이스트.kr